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3775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377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51141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계열, 이희창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24. 5. 9.

판결선고 2024. 6. 2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51141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275,090원 및 그중 227,829,735원에 대하여 2022. 1. 13.부터 2022. 3. 3.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21. 8.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는 C에게 같은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26160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의 1차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8. 3. 9.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액 1억 6,150만 원, 보증기간 2018. 3. 9.부터 2019. 3. 8.까지(이후 보증기간이

2022. 3. 4.까지로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3. 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A의 2차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와 피고 B의 책임경영이행약정

1) 원고는 2018. 7. 30. A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액 2억 2,500만 원, 보증기간 2018. 7. 30.부터 2028. 7. 28.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7. 30.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한편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 과정에서 같은 날인 2018. 7. 30. 원고와,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대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

약정인은 보증기업이 원고로부터 제1조 표시 신용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 표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이하 ‘보증기업’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의 각 조항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기업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어 부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약정인이 제2조에서 정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

다.

1. 보증기업 : A

2. 신용보증약정 : 2018. 7. 30.자 신용보증약정서 (개별거래용 / 한도거래용)

3. 보증원금(한도금액) : 2억 2,500만 원

4. 보증(한도거래)기간 : 2018. 7. 30.부터 2028. 7. 28.까지

제2조(책임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약정인과 보증기업은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4.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회생, 파산, 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유용 등의 금지

5. 명의대여, 사해행위, 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의 금지

6. 제6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 외 사용금지

7.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책임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

8.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등)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고는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전구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④ 제2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 시 자구노력 없이 휴업,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는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 피고 B와 C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 양수계약과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변경

1) 피고 B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3. 21.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 양도 · 양수계약 및 경영권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A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경영에서 탈퇴하였고, 같은 날 C은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그 무렵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 또한 피고 B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A는 2021. 8. 18.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1. 13. 중소기업은행에 연체 대출원리금 392,861,287원[= 165,031,552원(1차 보증 원금 161,500,000원 + 이자 3,531,552원) + 227,829,735원(2차 보증 원금 225,000,000원 + 이자 2,829,735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와 A는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외에도 미수 보증료, 미수 연체보증료, 미수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미수 보증료는 948,690원, 미수 연체보증료는 21,050원, 미수 위약금은 943,150원, 채권보전비용은 1,532,465원이다.

3) 또한 원고와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8%이다.

마. C의 재산 처분행위

1) C의 배우자인 E는 2019. 3. 20.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9.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2019. 5.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과 E는 2020. 7. 2. F조합과, C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C은 2021. 8. 9. 피고 D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26160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나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C에게 A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경영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따라서 피고 B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275,090원(=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대위변제금 227,829,735원 + 미수 보증료 948,690원 + 미수 연체보증료 21,050원 + 미수 위약금 943,150원 + 채권보전비용 1,532,465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27,829,735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2.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3. 3.까지는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 4. 2.부터 중소기업이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및 제4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반하여 피고 B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나 제3호증, 제1심 법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 4. 2.부터 중소기업이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때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및 제4조는 그 전까지 이루어지던 보증대상기업 대표자의 무조건적인 연대보증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법인 대표자가 책임경영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법인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바,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반하여 피고 B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원고의 사전동의’는 보증대상기업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A가 2021. 8.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훨씬 전에 이미 피고 B가 A의 주식과 경영권을 처분하였음을 알았고,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을 피고 B에서 C으로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면서도 주채무자인 A에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의 ‘원고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피고 B가 그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4조에 관하여 약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조항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B는 위 조항에 근거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4조에 관하여 약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다룬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2, 14, 15호증, 을나 제1호증, 항소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 B에게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중요한 내용인 제2조 및 제4조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약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는 같은 날 함께 작성된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서와는 별개의 서면(총 3장)으로 되어 있고, 8개 조항이 1, 2쪽에 걸쳐 기재되어 있는데, 조항이 많지 않고 사용된 용어도 그리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피고 B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의 3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신용보증약정서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는지를 묻는 부동문자로 된 질문 및 신용보증약정서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를 묻는 부동문자로 된 질문에 대하여 각각 자필로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피고 B는 2003년 2월경부터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는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2014년부터 A가 원고의 신용보증을 이용해 왔고, 피고 B는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는 신용보증과 연대보증책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렇듯 이미 신용보증과 연대보증책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 B는 원고와 A 사이에서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도 여전히 A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여기에 위 ①항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③ 항소심 증인 J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의 직원인바, 피고 B가 위 약정 체결일인 2018. 7. 30.경 원고 경기광주지점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책임경영이행약정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회사 대표들에게 위 약정을 체결하는 취지, 위 약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및 그 위반 시 책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피고 B에게도 그러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 B가 C에게 A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상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피고 B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내용을 몰랐거나 그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약정서를 작성한 때부터 8개월가량이 흐른 뒤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내용을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여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피고 B로부터 A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C이 A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20. 3. 12.경 원고에게 보낸 ‘책임경영약정 이행인 변경 요청’ 서면(갑 제12호증)을 보더라도 전임 대표이사이던 피고 B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사전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B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에 따른 책임은 전형적인 연대보증책임이 아니라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시점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 B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고 B의 채무불이행 후 A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B가 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① 피고 B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② 원고는 이미 2019. 4. 초순경 피고 B가 A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을 C으로 변경하면서도,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고지하거나 주채무자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특별손해에 관한 예견가능성 부존재,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책임의 제한 내지 면제 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 및 제4조에 정해진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계약상 책임에 해당할 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피고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항은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A의 이자 연체로 2021. 8. 18.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A, C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사전구상권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을 피고 D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C에게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6쪽의 “4.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황성미, 판사 허익수

별지